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9. 11. 6.(수) 09:33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욱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불참위원 : 김석진 부위원장 (1인)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3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전혜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19년도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시지 않아도 이것은 검토한 사항이니까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제5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CJ헬로(주)와 KT(주)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 (2019-53-291)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CJ헬로(주)와 KT(주)간 체결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 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피신청인 KT(주)은 신청인 CJ헬로(주)의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제33조제2항 개정요구 내용 중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그 사유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 당일 또는 그 사유의 효력 발생 예정일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변경하며, ‘사전 서면동의’라는 문구 대신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와 협의 결렬 시 상대방의 협정서 해지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문구로 수정한다. 또한 양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해지 이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한다. <2> 제안이유, 신청인 CJ헬로(주)가 피신청인 KT(주)를 상대한 제기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기초사실, <가>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일반 현황입니다. 신청인 CJ헬로(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해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피신청인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이동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가통신사업 및 종합유선방송국 운영 등도 사업을 영위하며 2018년 매출액은 1조 1,780억원, 영업이익은 680억원입니다. 피신청인 KT(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해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부분과 미디어·콘텐츠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8년 매출액은 23조 4,601억원이며,

영업이익은 1조 2,615억원입니다. <나> 신청인의 재정신청 경위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정서를 체결하고, 피신청인의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이용하여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 중이며, 협정서 제34조제2항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본건 조건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 취지입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5년 12월 29일 체결한 협정서 본건 조항의 개정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제34조제2항은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경우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항을 개정 요구하는 제34조 제2항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경우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 요구하였습니다. <나> 주요경과입니다. 2011년 10월 12일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도매제공협정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12년 7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29일까지 4차례 걸쳐 협정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18일 신청인 CJ헬로(주)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 주요쟁점입니다. 첫째, 본건 조항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등의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둘째 본건 조항 중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한다는 부분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점은 없는지, 셋째 ‘사전 서면동의’ 내용이 일방에게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3개월 전 사전통지 의무의 불합리성 부분입니다. 조문은 양 당사자가 체결한 본건 조항 중 ‘그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를 한다는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인인 CJ헬로(주)는 본건 조항 중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영업양도, 피인수 또는 피합병 계약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영업 양도 등은 기업 내부에서도 비밀스럽게 추진되고, 계약체결의 결정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사유발생일 3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KT(주)는 실무적으로 합병 등으로 인한 변경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합병 등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또한 피신청인이 합병 등 사실에 대한 비밀을 준수함으로써 신청인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으며, 합병 등 계약이 체결된 후에 피신청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전동의의 불합리성 부분입니다. 신청인 CJ헬로(주)는 합병 등의 경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에서 신청인의 합병 등을 봉쇄하는 불공정 행위이며, 신청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별정통신사업자로 영업양도 등 사유 발생 시 정부기관의 심사를 받게 되므로 피신청인의 추가적인 사전동의는 불필요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체결한 상호접속, 동등결합 등 다른 계약에서도 영업양도 등에 대한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는 점, 그리고 경쟁사업자에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은 합병이 결정된 이후 사후적 조치로도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KT(주)는 경영권 변동 조항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정이며, 본건 조항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체결된 조항이라 보기 어렵고, 본건 협정의 성격상 반드시 필요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기관의 심사는 사업자의 재정건전성과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용자 및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상호

접속협정은 이용자 보호와 관련이 없고, 동등결합협정에 따른 이용자는 피신청인의 고객으로 피신청인이 관련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본건 협정과 달리 사전 동의의 필요성이 낮으며, 피합병 등의 영업 비밀은 매우 은밀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사후 조치를 통해서는 피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으므로 사전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다섯 번째, 판단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동의를 합병 등의 효력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건 조항은 본건 조항 위반 시….

○ 허 육 상임위원

- 그것은 나중에 들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안들은 의견 듣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한상혁 위원장

- 판단 문제를요?

○ 허 육 상임위원

- 예. 그 사안들은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 표철수 상임위원

- 판단은 진술인들 의견을 듣고….

○ 고삼석 상임위원

- 사무처 의견 들어보지요.

○ 한상혁 위원장

- 사무처 의견인데 일단 들어보시고, 어떻습니까?

○ 허 육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주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듣고 난 이후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도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의견 들어보고….

○ 한상혁 위원장

- 고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이것은 사무처 판단이지 않습니까?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사무처 판단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분이 그렇게 하시면….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하시지요. 사업자 의견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욱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신청인 CJ헬로(주)와 피신청인 KT(주)을 대표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출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裁定) 관련 안건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확인이 필요할 경우 양 당사자 측에 직접 질의하셔도 좋을 듯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계시지요? 소개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호 KT(주) 사업협력부문 통신경쟁담당(상무보)

- 안녕하십니까? KT(주)의 사업협력부문 이영호 상무입니다.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안녕하십니까? CJ헬로(주)의 모바일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조강호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내지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욱 상임위원

- 별도로 두 사업자 간에 서면제출을 했습니다만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자 측이나 아니면 법률대리인 측에서라도 간단하게 각자의 주장을 조금 더 요약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CJ헬로의 조강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을 신청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본건의 조항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하면 인수나 합병 등을 추진할 때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는 가입자 보호나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충분히 협조하고 그리고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협정서 내용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해야 하는 의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조하고 협력할 기본적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경영권 침해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서 내용은 MNO와 MVNO 간의 도매제공에 관한 약정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매제공에 관련된 것보다는 경영권에 대한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피신청인 측도 간단하게 답변요지를 말씀해 주시지요.

○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피신청인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장주봉 변호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전동의 조항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라이선스 계약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계약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규정이고, 이런 사전동의 규정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여태까지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매제공 관련된 고시에서 보면 도매 제공된 서비스를 재제공할 때 도매제공한 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A나 영업양도 같은 경우 사실상 경영권이 바뀌고, 그다음에 영업양도 같은 경우 사업주체가 바뀌어서 도매제공한 서비스 자체가 통째로 양도되는 경우인데 도매제공 고시 취지를 비추어 봤을 때도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인정한 그런 사전동의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지만 경영권이라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있으면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은 당연히 배려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전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동의 없으면 M&A를 하지 말라, 이런 취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지요. 허 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허 육 상임위원

- 제가 KT 측에 묻겠습니다. 쟁점은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면서 취득한 KT의 영업비밀이지요. 도매대가나 각종 지원정책, 개인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설비나 자산 이런 부분들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경쟁회사로 넘어가서 상당한 정도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동의가 어렵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바꿔서, 예를 들면 KT도 다른 사업자 SKT와 연관된 사업자 가운데 일부와 인수합병이 일어날 경우에 마찬가지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를 테면 사전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인수합병을 무력화시키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익침해 상황들이 예상은 되지만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사전동의 거부라는 형태밖에 없는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규정 양쪽 당사자에 다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다음에 만약 M&A를 진행했을 때 사전동의를 못 받는다면 당연히 계약 위반한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해지 이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전동의 규정을 넣은 이유는 사전동의를 위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라든가 아니면 M&A를 실행하는 당사자인 상대방이 지키고자 하는 이익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를 통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사전동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동의를 거절하는, 이런 취지에서 사전동의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희가 일부 수정안도 제출했었고, KT에서 바라는 부분은 사전동의라는 취지가 충분히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KT 이익이나 아니면 이용자 보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협의 그다음에 합의 이런 것들이 보장된 이후에 M&A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보장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1년 10월에 첫 도매제공협정서가 체결되었고, 2015년 12월 29일 4차 개정까지 이루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협정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협정의 계속조항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 이영호 KT(주) 사업협력부문 통신경쟁담당(상무보)

- 지금 현재는 계속 양 당사자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2015년 협정을 그대로 효력을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이 협정서의 효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M&A가 진행됐을 경우에 ‘사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약을 위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이 됐을 경우에 합병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까지 효력의 범위가 미친다고 보는지요? 그리고 제34조 외에 제35조 협정의 해지조항을 보면 제1항제5호, 예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 폐지 또는 종료 예정 3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와 제1항제5호에 보면 ‘상대방이 기타 본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고 동 위반에 대한 시정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돼 협정이 해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행하는 경우에 협정의 해지로 인해 나타나는 손해배상이나 여타의 문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안에 관해 KT나 CJ헬로 측에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의견을 부탁합니다.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CJ헬로(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수합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전동의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본적으로 이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영업비밀이 다른 경쟁사에 넘어간다든지, 가입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아마 컸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 자체가 기본적으로 M&A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 산업의 판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도매제공협정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는 SKT 향도 취급을 하고 있고 KT 향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영업기밀이 경쟁사로 넘어간다는 그런 우려는 제가 볼 때는 기우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호 KT㈜ 사업협력부문 통신경쟁담당(상무보)

- KT 입장에서 저희 협정의 효력이 저희가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M&A 자체가 불가하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협정에 있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M&A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저희는 협정서 위반으로 손해배상이나 이런 별다른 법적 대응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M&A 자체를 저희가 거기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2015년도에 SKT, CJ헬로 인수합병이 있을 때도 이 조항을 가지고 저희가 인수합병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는 없고, 단지 저희 협정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저희만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SKT도 다른 MVNO들과 이러한 유사한 사전동의 조항들이 들어가 있고, 단 하나는 과거에 CJ헬로가 KT의 도매제공을 통해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하다가 SKT 도매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하기 위해 그때 SKT와 협정을 체결했을 때 이 문구는 빠져 있습니다. 유일하게 SKT와 CJ헬로 MVNO 협정서 중에 그 건이 빠진 이유는 저희가 알기로는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넣지 않은 것이고,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SKT도 다른 MVNO와 협정서는 저희와 유사한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허 육 상임위원

- 제가 추가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질의 충분히 하시지요.

○ 허 육 상임위원

- 우려사항 중 하나는 영업비밀의 이전도 있지만 이용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조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용자 보호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CJ헬로 측 입장이나 다른 조항과 달리 이용자 보호는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나 진전사항이 있는지 관련해서도 양측의 설명을 추가로 부탁합니다. KT 측에서 이 조항이 만약 사전 서면동의가 안 된다고 할 경우 이용자에 관련된 보호가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을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 이영호 KT㈜ 사업협력부문 통신경쟁담당(상무보)

-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 KT라는 가입자가 있을 것이고, 인수합병에 들어가면 다른 경쟁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MNO인 경쟁사에 계열사로 넘어갔을 때 저희로

봤을 때 저희 가입자들은 애초에 MVNO로 가입을 할 때 대부분 KT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서 도매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그 선택 기준에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수합병이 됐을 때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이 KT향 가입자들을 인위적으로 경쟁사가 본인들 가입자로 넘기는 그런 작업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KT향 가입자에 대한 품질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입조건 여러 가지 혜택조건들에 대해 이런 것들은 경쟁사로 넘어갔을 때 본인들 고객화로 넘기기 위한 부분이 저희가 우려 되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 향 가입자들에 대해 그런 가입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업자 간 협의를 해서 안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동의 문구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CJ헬로 측에서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이용자 이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현재 취할 계획입니까?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KT 측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 오류가 하나 있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CJ헬로와 SKT가 도매제공을 체결했을 때 사전동의가 빠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SKT가 MVNO 사업자들과 협정서 체결할 때 그 조항이 동일하게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수정해서 협정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동의라는 수정문구를 가지고 다시 협정을 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KT와 사전동의라는 내용들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이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가입자나 기존 가입자나 동일하게 적용을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 가입자나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도매제공협약에 의해 도매제공자가 MVNO가 제공하는 도매정책이나 제도에 따라 정책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율권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모든 사업자가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KT라는 가입자를 경쟁사로 이전할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차별을 통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또 협정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SKT향 가입자든 KT향 가입자든, 또 다른 회사의 가입자든 동일한 저희의 가입자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경쟁사의 가입자다’ 이것은 MNO에서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동일한 가입자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허 옥 상임위원

- 그러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KT를 통해 가입된 MVNO 알뜰폰 가입자에게 인수합병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KT를 계속 사용하겠다, 혹은 전환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CJ 헬로가 SKB를 통해 거꾸로 권유가 되거나 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우선의 선택권이

명확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 가입자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신규모집에 대한 영업활동만 할 뿐이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기존의 가입자든 신규 가입자든 본인의 선택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지,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향을 선택했을 때 더 유리하다는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 허욱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죄송하지만 약간 보완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용자 보호 측면도 있지만 도매제공협정서는 서로 당사자들 이익을 보호하는 부분도 1차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현재 CJ헬로 입장에서는 KT네트워크를 쓰는 고객도 CJ헬로 고객이고, 그다음에 SKT 네트워크를 쓰는 고객도 CJ헬로 고객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 지금 M&A가 예정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 KT 경쟁사업자가 CJ헬로를 인수했을 때도 동일한 논리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J헬로가 원래는 KT네트워크만 사용해서 MVNO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 SKT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SKT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비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GU+에서 현재 M&A 진행 중인데 LGU+가 인수하고 나면 LGU+ 네트워크를 이용한 MVNO 서비스도 추가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LGU+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KT 네트워크를 쓰는 고객도 똑같은 CJ헬로 고객이라는 논리가 계속 그때까지 성립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앞에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CJ헬로(주) 쪽에 물어보겠습니다. 도매제공 공급시장의 특징이 과점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사자 간 협의하고 합의가 결렬됐을 경우가 있겠죠. 사전 서면동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계시니까 결렬됐을 경우에 거꾸로 상대방의 해지권 보장을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사전 서면동의를 하지 않고 그런 조항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시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하고 합의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예.

○ 표철수 상임위원

- 이렇게 해지할 때 거꾸로 상대방의 해지권도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 주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사전동의라는 것은 당사자 간 뿐만 아니라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이것을 협력하고 말고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사자 간, 예를 들어 사전동의가 합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부의 승인이 나더라도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하나가 첫 번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면 사전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됐을 경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점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입자 보호, 영업기밀 누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정서 내 다른 조항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킬 의무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통해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충분히 상대방 측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이 조항에서 사전동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KT 쪽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사전동의 관련해서 사전동의를 못 받았을 때 M&A 실질적인 효력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계속 KT나 아니면 CJ헬로 쪽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양쪽 주장이 다르니까 저희가 주장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 SKT가 CJ헬로 인수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이 조항에 근거해서 KT가 공문을 보냈었는데 CJ헬로나 SKT가 계속 M&A를 쪽 진행했었다, 다만 인허가 문제 때문에 좌절된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전동의 조항 관련해서 저희는 사전동의 조항이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전동의 조항을 근거로 해서 KT가 사전동의를 해 줄 테니까 이용자 보호라든가 아니면 KT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해 이런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사전동의를 해 주는 합의가 되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불명확해서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저희 수정안을 협의 과정에서 제출했듯이 어떤 특정한 몇 가지 사유에 대해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것도 수용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는 충실한 협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충실한 협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나 KT의 정당한 이익보호를 위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CJ헬로나 아니면 어쨌든 M&A를 실행한 당사자가 협의해 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규정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수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두 분이 충분히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두 가지만 더 해 질의하겠습니다. 약간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KT에서는 협정서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협정서이다, 또 과기정통부의 도매 제공의 조건,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장주봉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CJ헬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협정서가 갑을 관계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이해 당사자 간 동일한 것을 놓고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에서 표준계약서나 협정서를 제시하더라도 계약의 당사자 간 계약의 체결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변경, 해지 전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J헬로를 보면 KT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협정서는 2015년 12월 29일에 체결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로 이 의견서 내신 것처럼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을 받았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계약하신 것입니까?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이 약정서는 저희가 MVNO 사업을 시작할 때 체결된 약정서입니다. 그때부터 2015년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었고, 저희가 2015년 말에 이것을 수정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못한, 저희 불찰입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거나 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아마 예측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MVNO들 공통된 약정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날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재정 건을 계기로 정부가 어떤 기준을 제시했더라도 지금 이해당사자 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이 건 처리 이후 이런 부분들을 과기부에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사전에 과기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그쪽 M&A 담당 쪽과 저희들이 재정 건 검토하면서 사전에 의견을 교환하고, 저희 재정 건을 공식적으로 주면 아마 과기정통부가 전체적으로 각 알뜰폰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도매제공 협정서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CJ헬로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M&A 건이 없었다면 불합리해도 그냥 참고 있을 생각이었습니까? 이런 M&A 건 성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KT와 맺은 협정서 내용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이었습니까?

○ 조강호 CJ헬로(주) 헬로모바일사업본부장

-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협의의 과정을 거쳤었고, 또 방통위에 중재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재정까지 온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KT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지금 간략히 제출되어 있는 KT 의견서의 수정 의견을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양도 등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는 영업양도 전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법적으로 M&A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는 것은 또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행정적으로 판단하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MVNO 사업권 관련해서 M&A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수하는 사업자 측으로 양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사업자들끼리 또 분쟁의 여지가 있으면 이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 이영호 KT(주) 사업협력부문 통신경쟁담당(상무보)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영호 KT(주) 사업협력부문 통신경쟁담당(상무보)

- 그런 일정 부분 저희가 인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가 해지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래관계가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협의가 진행되다가 일방이 협의의무를 해태해서 협의를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그러면 이 부분 해결이 안 됐을 때 KT 입장에서 과연 도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도매제공을 이용해서 MVNO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된다고 일방 상대방이 협의를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지 권한밖에 없다면 저희가 아무런 실효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전에 사전동의를 넣은 것도 아까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인수합병 이런 저지의 목적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실효성 있게 구속력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협의가 일방이 만약 사전동의 전이 없다면, 일방이 협의과정을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다가 결국 협의가 깨지고, 그러면 KT 입장에서는 해지권만 가진다면 당장 저희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는 방지하고 어떤 사업자 간의 협의과정에 대해 실효성 있고 구속력 있는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협정서 규정의 효력 범위와 무관하게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사후에 발생할 법률적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우리는 안건을 뒤로 미루고 당사자 간의 협의를 좀 더 진행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안건은 차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고려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욱 상임위원

- 제가 의견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자 간 그리고 이용자 간 분쟁이 아니라 사업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있어서 재정 신청을 한 것은 처음입니까, 아니면 종전에도 있었습니까?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과거에도 있었고, 올해는 처음이지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 허욱 상임위원

- 저는 이 사안이 중요하고 사전에 중재해도 해결이 안 되어서 재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론은 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렵고 관련된 서면 제출 자료, 또는 오늘 주장까지 들어봤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서 차기 회의에서 재정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같은 생각이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저도 좋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건은 법적으로는 별도의 다툼이 필요하지만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기업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협정서가 이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양 당사자, 특히 KT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 생각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정리할 것입니다. 그 전에 당사자들끼리 최대한 협의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타협해서 의견을 가져오시면 그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위원장님, 재정 건이 법에 재정을 접수하고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고 1회에 한해서 90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료 보완 요구한 기간을 빼고 이 재정 건이 11월 15일 1차로 90일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11월 15일까지 더 기한을 추가해 넘길 경우에는 오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1차에 한해서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을 의결해 주시면….

○ 한상혁 위원장

- 15일이면 다음 주….

○ 허욱 상임위원

- 다음 주에 의결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가능하지 않습니까?

○ 반상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괜찮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예, 그렇게 하시지요.

○ 허 육 상임위원

- 다음 주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정서 규정의 해석 문제나 이후 M&A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할 사업자 간 분쟁, 그리고 이용자들의 불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더 논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11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19년 제5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18분 폐회 】